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5611

발의연월일: 2024. 11. 15.

발 의 자:이연희·정준호·김남희

김정호 · 최기상 · 복기왕

허종식 • 정성호 • 유종군

김윤덕 • 문진석 • 황 희

박홍배 • 문금주 • 박상혁

이춘석 • 한민수 • 민형배

이정문 의원(19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승차권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매한 가격을 초과하여 타인에게 되파는 행위(암표 매매)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자동으로 특정 명령을 반복 입력하여 짧은 시간 동안 대량 정보를 송신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승차권 구매가 성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는 암표 매매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철도사업자의 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다른 사람의 승차권 구매를 방해함에 따라 그 폐해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승차권 구매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건전한 시장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제2항 신설 등).

법률 제 호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증서"를 "증서(이하 "승차권등"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 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승차권등을 구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1조제1항제4호 중 "제10조의2를"을 "제10조의2제1항을"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1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승차권등을 구매한 자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의2(승차권 등 부정판매의	제10조의2(승차권 등 부정판매의				
금지) 철도사업자 또는 철도사	금지) ①				
업자로부터 승차권 판매위탁을					
받은 자가 아닌 자는 철도사업					
자가 발행한 승차권 또는 할인					
권・교환권 등 승차권에 준하					
는 <u>증서</u> 를 상습 또는 영업으로	증서(이하 "승차권등"이라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u>한다)</u>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					
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					
니 된다.					
<u><신 설></u>	②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				
	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				
	른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				
	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				
	로그램을 이용하여 승차권등을				
	구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제51조(과태료) 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 <u>제1(</u>)조의2를	위병	반하여	격	상f	合
	또는	영업으로	= =	승 차건	1	또늯	=
	이에	준하는	증시	를	자	신	[(د
	구입형	한 가격을	초:	과한	금	액스	<u>></u>
	로 다	른 사람이	세게	판미	하	거니	+
	이를	알선한 기	\ }				

<u><신 설></u>

② ~ ⑤ (생 략)

4. <u>제10조의2제1항을</u>
4의2. 제10조의2제2항을 위반하
여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
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승차권
등을 구매한 자
② ~ ⑤ (현행과 같음)